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□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!
 그리고 선배 · 동료 위원 여러분!
 안녕하십니까?
 국민의힘 광진 제3선거구 출신 김영옥 의원입니다.
- □「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 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- □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38호 「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- □ 고령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, 전통문화유산인 효 문화 장려를 위해 효를 실천하는 가정을 격려할 필요가 있어, 90세 이상 어르신 등 나이 드신 부모를 봉양하는 가족 등을 표창하여 부양가족을 격려하고, 장수노인에 대한 지

원을 통해 효행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- □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□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
아무쪼록,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